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6
----------	-------

발의연월일 : 2023. 2. 20.

발 의 자 : 박 진 · 김상훈 · 김도읍
홍문표 · 엄태영 · 서병수
이종배 · 조명희 · 김선교
황보승희 · 박덕흠 · 김승수
김영식 · 정경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

감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제23조제1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2.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39조의15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71조제3호 중 “제23조제1항을”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6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3조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신 설>

1.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2.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제2항-----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2항제1호-----

4. ~ 7. (생 략)

② ~ ⑧ (생 략)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 6. (생 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의2. ~ 3.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

-----.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4. ~ 6.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

-----.

1. 제23조제3항-----

1의2. ~ 3.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p>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7. ~ 13. (생략)</p> <p>③ ~ ⑤ (생략)</p>	<p>6. 제23조제3항----- ----- ----- ----- -----</p> <p>7. ~ 13.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